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6월 5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6월 14일

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고객과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시민중심의 조직기능 향상으로 새민선 주요시책의 역동적인 추진과 함께
-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
-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별표1)
 - 총 정 원 : 1,499명 → 1,512명(+13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72명 → 1,484명(+12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7명 → 28명(+1명)
 - 직급별 정원조정
 - 일반직 : +19명(6급+3, 7급+7, 8급+7, 9급+2)
 - 별정직 : 6급+1명, 7급 △1명
 - 지도직 : 생활지도사 △1명
 - 기능직 : △5명(6급+2, 7급+1, 8급+4, 9급+7, 10급 △19)
 - 기관별 정원조정
 - 본 청 : 604명 → 650명(+46)
 - 의회사무국 : 27명 → 28명(+1)
 - 출 장 소 : 81명 → 82명(+1)
 - 직속기관 : 155명 → 152명(△3)
 - 사 업 소 : 263명 → 228명(△35)
 - 읍 면 동 : 369명 → 372명(+3)
-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(안 별표2)
 - 기한연장 : 당초2007. 6. 30 → 2008. 6. 30까지
 - 한시정원(2)
 -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 : 6급1명, 7급1명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경상북도 정책기획관-213('07.1.5)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 통보
- 경상북도 정책기획관-2506('07.3.2)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과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 및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지침에 의하여
-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
 - 1,499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,512명으로 조정하고
 - 집행기관의 정원은 12명이 증원된 1,472명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28명으로 조정하였음
- 직급별 정원조정은
 - 일반직은 6급3, 7급7, 8급7, 9급2 등 19명 증원하여 1,157명으로
 - 별정직은 27명 정원변동 없으나 6급1명 증원, 7급1명 감원
 - 지도직은 1명 감원하여 33명으로,
 - 기능직은 5명 감원하여 29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음
(6급2명, 7급1명, 8급4명, 9급7명 증원/ 10급19명 감원)
- 기관별 정원조정은
 - 본청 46명 증원 650명,
 - 의회사무국 1명 증원 28명,
 - 출장소 1명 증원 82명,

- 직속기관 3명 감원 152명,
- 사업소 35명 감원 228명,
- 읍면동 3명 증원 37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음
-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은
 -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 6급1, 7급1 등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당초 2007.6.30에서 2008.6.30까지 1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 검토사항은

-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가 2007.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기구·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법령상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
-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 및 총정원의 적정관리 여부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정 등에 반영되므로 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적정인원이 증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